

일본련 지적재산센터의 활동과 역사

일본련 지적재산센터¹

1. 들어가는 말

일본련 지적재산센터(이하 '지재센터'라고 한다.)는 지적재산권의 확립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본련'이라고 칭한다.)² 내의 전문특별위원회이다³ 4.

조직의 계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는 일본련의 역사에 필적할만한 전통을 가지는 '지적재산제도 위원회'와 2002년 2월 25일 고이즈미내각이 '지적재산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 전략본부⁵의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 동년 6월 22일에 일본련 회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일본련 내에 설치된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가 발전적으로 통합되어 2009년 6월 1일에 탄생한 조직으로 지적재산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하, 조직의 개요와 연혁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2. 지적재산센터의 조직

(1) 목 적

지재센터의 목적은, '지적재산권의 확립, 보급 및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고 분쟁처리제도등 사법관련사항에 관한 정책의 제언 등을 통하여 더 나은 지적재산제도의 발전을 꾀하고, 회원들이 지적재산업무에 관여하기 위한 시책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일본련 지적재산센터의 설치요강 2조).

(2) 임 무

지재센터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일본련지적재산센터

¹ 문책: 일본련지적재산센터위원장 변호사 이하라 도모미, 동사무국장 변호사 와세다 유미코

²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본련)은 전국 52의 변호사회(기본적으로 각 도도부현 단위로 1개의 변호사회가 있고, 동경에는 동경변호사회, 제1동경변호사회, 제2동경변호사회의 3개의 변호사회가 존재하고, 북해도에는 아사히가와변호사회, 쿠시로변호사회, 삿포로변호사회 및 하코다테변호사회의 4개 변호사회가 존재한다. 각 지역에 존재하는 변호사회를 '단위회'라고 칭하기도 한다.),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본전국의 모든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은 각지의 변호사회에 입회함과 동시에 일본련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련은 일본국헌법의 제정에 따라 전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변호사회법에 입각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49년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2014년 10월 1일 현재 변호사수는 35,007명이다.

³ 일본련에는 자격심사회 및 징계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 인권옹호위원회 및 사법제도조사회 등의 설치위원회뿐 아니라 각종 목적별로 많은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본련지적재산센터는 그 중 하나이다.

⁴ 2009년 2월 19일부 일본련 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일본련 지적재산센터 설치요강'에 근거한 것이다.

⁵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연혁은 이하 URL 기재를 참조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enkaku.html>

설치요강 3조).

- ①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제언
- ②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관한 입안 및 제언
- ③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관한 정부, 심의회, 관련단체와의 협의 및 교류
- ④ 지적재산에 관한 법조양성 및 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 ⑤ 지적재산에 관한 회원의 업무확대를 위한 활동
- ⑥ 기타 일본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활동

(3) 위원회 구성

지재센터의 위원회 수는, 85명 이내로 규정되어 동경도,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의 대도시(많은 변호사회원이 소재하는 단위회)에서 소정의 인원이 위원이 되어야 하고, 그 외 전국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지역(북해도변호사회연합회 등 고등재판소소재단위로 조직된 각지의 변호사회연합회)에서도 최저 2명의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지재센터의 위원은 각 지역 단위회의 추천을 참고로 하여 일변련이사회가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⁶ 2014년도에는 위원장 이하 77명의 위원이 전국 모든 단위회에서 선출되었다. 지재센터 위원은 정부의 지적재산 전략본부,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 심의회 및 특허청의 각종 검토회, 문부과학성의 문화심의회 등의 위원으로 취임해있는 자가 많고, 또한 동경고등재판소,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그 외 재판소의 지적재산 전문부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직 판사, 외무성, 경제산업성의 임기부직원으로서 근무경험을 가진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그야말로 질과 양의 모든 면에서 충분한 진용을 자랑한다.

(4) 임원직

지재센터의 임원직으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을 두게 되어 있고, 임역원은 위원이 돌아가며 맡는다. 임기는 1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2009년 6월의 지재센터 창설 이래 올해까지의 위원장은 아래와 같다.

2009 년도 이이가 히데도시(동경⁷) 2012 년도 마츠모토 츠카사 (오사카)

2010 년도 가타야마 에이지(제 1) 2013 년도 하야시 이즈미 (동경)

2011 년도 스에요시 와타루(제 2) 2014 년도 이하라 도모미 (교토)

(5) 사무국

지재센터 내에는 위원 변호사로 구성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차장 1명 외 교토 오사카 단위회로부터 24명의 능력있는 변호사가 사무국원으로 선임된다.⁸

(6) 간사

⁶ 지재센터뿐만 아니라 일변련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규칙(1968년 7월 20일 규칙 제 22호(최종개정 2001년 11월 20일))에 근거한 것이다.

⁷ 이름 뒤에 기재한 지역은 소속 단위회를 말하고, ‘제1’은 ‘제1동경변호사회’, ‘제2’는 ‘제2동경변호사회’를 가리킨다.

⁸ 사무국원은 지재관련업무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중견의 변호사로 교토, 오사카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지재센터 내에는 수명의 간사를 둔다. 간사의 책무는 '회장 및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 의안의 입안, 정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을 하는 것'이다(특별위원회규칙 제0조4항).

간사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하게 지재센터의 운영 및 의견형성과정에 관한 조언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⁹ 의안의 입안 및 자료의 수집, 정리와 같은 사무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정부위원장이나 사무국원의 책무이다.

3. 지재센터의 활동형태

(1) 전체회의

위원 일동이 모이는 회의('전체회의'라 부른다.)는 매월 1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동경의 카스미가세키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원거리에 있는 위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전체회의 참가가 가능하다. 많은 경우에는 전국 5, 6개소의 위원이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사무국장의 의사진행 아래 퍼블릭코멘트 등의 법제도 개혁관련 안건(일변련이 제출하는 의견서 등의 초안작성), 지재연수 그 외의 이벤트관련 안건(기획, 준비, 실행), 변호사업무 안건, 재판소나 특허청 등의 지재관계 국가기관, 지재관련 업계단체 등의 국내외의 지재관계단체와의 의견교환과 협력에 관한 안건 등, 각종 심의사항을 심의하고 보고사항을 보고한다.

(2) 프로젝트팀(PT) 등의 설치

지재센터는 80명정도의 위원을 가진 대규모 단체로, 항상 전체회의로 심의를 진행해서는 깊은 의논이 어렵기 때문에 각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프로젝트(PT)를 조직하고 있다. 2014년도에 설치된 PT로는 특허 PT (좌장 이토 마코토), 의장·상표·부정경쟁 PT (좌장 후루시로 하루미), 저작권 PT(좌장 이토 마코토), 국제 PT(좌장 무라타 신이찌), 연수·업층 PT(좌장 스에요시 와타루), 섭외 PT(좌장 사가에 타카요시)의 6개 PT이다.

지재센터의 각 위원은 적어도 하나의 PT를 선택하여 이에 소속하여야 한다. 각 PT는 취급사항(위원장이나 전체회의로부터 개별안건에 관한 조사나 준비활동 등을 부탁받는다.)에 관하여 전체회의일 당일의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5시의 시간대에 PT회의를 개최하여 의논하는데, 그 이외에도 임시적으로 회합을 개최하거나 PT별로 작성된 메일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시로 활발한 의논을 전개하고 있다.¹⁰ 각 PT에서 의논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전체회의에서 재차 의논하여 지재센터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

PT와는 별도로 지재센터 횡단적으로 테마별 검토팀이 설치된다. 2013년도부터 지재재판제도 검토팀(좌장 하야시 이즈미)이 설립되어 지재재판제도에 관한 개별테마의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3) 정부위원장, 사무국회의

통상적으로 전체회의 개최일의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런치타임 미팅의 형식으로 그

⁹ 특별위원회 규칙 제10조4항의 조문해석으로는 '연구 등을 하는 것'의 '등'에 포함된다.

¹⁰ 각 위원은 정규의 소속PT 이외의 PT의 메일리스트에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어서 복수의 PT에 참가할 수 있다.

날 전체회의의 심의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위원장, 사무국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전체회의의 심의순서와 시간배분, 보고담당자의 확인 등의 사무적인 성격의 것으로, 실질적인 심의는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4. 지재센터의 활동내용

(1) 일변련 의견¹¹

일변련은 내각 및 그 외 정부기관이 제안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새로운 책정 및 개정에 관하여 의견서를 공표하고 또한 회장성명을 발표한다. 지적재산법의 분야에 관해서는 지재센터가 최종적인 이사회의 심사 및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의견서 및 회장성명의 초안을 작성한다.

(2)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및 동경지방법재판소 지적재산권부

지재센터에서는 1999년부터 해마다 지적재산소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동경지방법재판소의 지적재산권부와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여 2000년도에서 2013년도의 의견교환회의 내용이 판례타임즈지에 공개되었다. (판례타임즈 1051호, 1095호, 1124호, 1160호, 1177호, 1179호, 1207호, 1240호, 1271호, 1301호, 1324호, 1348호, 1374호, 1390호, Law & Technology No. 65)

(3) 국제전개

① 국제회의 개최의 서포트, 의견표명 등

국제법조협회(I B 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¹²의 일본대회가 2014년에 개최되었다. 지재센터는 국제법조협회의 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방문 및 동 재판소의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②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일본의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공장, 사무소를 열거나 국제거래를 할 경우 당해국가의 법제도, 법률관행 등에 의거하여 사업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중소기업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기란 쉽지 않다. 지재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전개를 돕기 위해 지재법률서비스에의 접근성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4) 각종단체와의 협의

필요에 따라서 지재관련 단체와의 의견교환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을 심화한다.

¹¹ 일변련의견서 등의 상세한 내용은 일변련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nichibenren.or.jp/activity/document/opinion/category/intellectual.html>

¹² 약 3만명의 세계각국의 법조인, 195개 이상의 법조단체가 가맹한 세계최대의 법률가 단체이다.

예를 들면, 일본지적재산협회와의 협의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산업계의 요청과 질문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5) 지적재산법 연수의 실시

일련연의 연수에서 지재센터는 지적재산 전문변호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 이래 매년 커리큘럼의 편성(강사 및 테마 선정)으로부터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법 연수를 주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산법 연수는 법률개정 등의 동향을 시의적절하게 소개하는 것, 변호사 이외의 관련업계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것, 지재관련업계 전체를 개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으로 전개된다.

5. 지재센터의 연혁

(1)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의 계보

①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

1963년 2월 19일에 개최된 일련연 전체이사회에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이 의제로 심의되어 그 설치가 결정되었다(초대의 위원장은 나가이 아레키산다(제2)이다).¹³

이전까지 공업소유권 법제의 대개정시에 임시 개정조사위원회가 조직된 일은 있지만¹⁴ 상설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일련연에서 이러한 상설 위원회의 설치가 검토한 계기는 1962년 12월 12일에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내에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심의회'가 설치되어¹⁵ 1962년 12월 19일부로 후쿠다 하지메 통산대신이 공업소유권제도개정위원회 회장에게 공업소유권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의 개정에 대해서 자문이 행해진 것에 기인한다. 일련연은 이러한 공업소유권제도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소수(10에서

¹³ 초대 멤버는 위원장 외, 부위원장은 마츠모토 시게도시(동경) 및 우자와 신(제1), 위원은 가와구치 쇼조(동경), 신지 스스무(동경), 와쿠이 소우지(동경), 나가타 다이지로(제1), 마츠카타 마사히로(제1), 우치다 모리후미(제2), 이시구로 준페이(오사카), 노마 마사아키(교토), 사치료조(나고야), 미하라 미치야(후쿠오카)였다. 위원장인 나가이 아레키산다(알렉산더, 변호사회 등록명은 아레키산. 어머니가 독일인이어서 가정내에서는 독일어로 대화했다고 한다.)는 외교관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저명한 국제파의 변호사였다. 천식, 감기등의 치료약의 성분인 에페드린을 개발, 추출하여 일본의 근대약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약학자인 나가이 나가요시의 장남이다.

¹⁴ 특허청의 공업소유권제도의 개정심의회에 대응하기 위해서(구체적으로는 1960년 7월 31일에 통상산업성내에 통산대신의 자문기관으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조사심의회'가 설립되어 동년 12월 20일부로 특허청 장관이 일련연에게 동 심의회에 대해서 1961년 3월 말까지 의견의 제출을 구하는 내용의 '공업소유권제도개정에 관한 의견의 제출'이라는 제목의 자문서를 보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1960년 12월 23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공업소유권제도개정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1961년 3월 5일에 설치되었다. 위원의 수는 10명이고 동 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은 나카마즈 준노스케(제2)이다. 그리고 특허심판과 소송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결정하여 일련연 회장에게 보고했다. 1957년에 동경고등재판소장관으로부터 '특허법 128조의 4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특허청의 거절사정 불복항고심판사건의 기록)의 이용방법을 개정하는 건'에 대한 조회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동 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되어 위원회는 폐지되었다.

¹⁵ 심의회개최의 취지는 '자유화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산업의 장기발전은 획기적인 기술개발에 좌우되게 되었다. 특히 근래의 과학 기술의 진보는 거액의 연구투자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기업의 입장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연구성과의 발명 등이 공업소유권제도에 의해서 적절하게 권리화되고 그 내용이 신속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외국의 경험을 참작하여 현실적 입장에 서서 공업소유권제도의 신시대적 적용을 도모하고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업소유권제도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유식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이다'는 것으로 1973년 당시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내용임이 흥미롭다.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를 위탁하여 일변련의 의견을 심의회에 반영하게 되었다.

② '무체재산권제도 위원회'

1972년 2월 19일의 일변련 이사회에서 '공업소유권제도 개정위원회'는 '무체재산권제도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의 위원장은 히카리이시 시로(제2)이다). 이것은 종전의 대응이 미비했던 저작권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증원하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저작권법은 학문상 공업소유권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무체재산권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③ '지적소유권위원회'

1989년 2월 17일의 일변련이사회에서 '무체재산권제도 위원회'는 '지적소유권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의 위원장은 혼마 다케시(동경)이었다). 이는 당시 매스컴 보도에서도 '무체재산권'이라는 명칭보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그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는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이사회 결의에 있었던 것을 이 기회에 특별위원회의 설치요강을 정비하게 되었다.

④ '지적재산제도 위원회'

2003년 9월 20일에 개최된 일변련 이사회에서 '지적재산권 위원회'는 '지적재산제도 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당시의 위원장은 고바야시 요이치로(오사카)이었다). 이는 동년 7월 8일에 정부의 지적재산 전략본부가 공표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에서 앞으로는 법령, 조약 등에서 사용되는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를 가능한 한 '지적재산권'으로 통일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제도 위원회의 목적, 임무는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 및 제도에 관한 입안, 3 각종심의회 및 정부관련기관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변련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지적재산제도 위원회 설치요강 2조). 위원의 수는 35명 이내이다.

(2)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의 계보

전술한 바와 같이 고이즈미내각은 2002년 2월 25일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상관저내에 내각총리대신이 개최하는 회의로써 '지적재산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동 회의는 동년 7월 3일 '지적재산 전략대강'을 공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변련은 2002년 6월 22일 이사회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전략의 사법관련사항(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처리절차, 지적재산관련의 법조양성문제, 변호사연수, 그 외)에 대해서 정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 교류하여 정책을 제언하고, 지적재산관련의 법조양성 등의 실현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변련 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를 설치했다(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 설치요강 2조, 당시의 본부장은 모토바야시 토오루 일변련회장이었다).

동 본부 위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지역성을 고려하여 일변련 회장이 지적재산 소송실무에

정통한 자(변호사)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선임하였다.

(3) '지적재산제도 위원회'와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의 통합

전술한 바와 같이 1973년 이래(임시의 위원회를 포함하면 1961년 이래)로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법제에 대해서 주로 법이론적 관점에서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한 '지적재산제도 위원회'와 지적재산관계분야에 관한 정책제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는 별개의 계보를 가지고 별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법제의 이론면의 조사연구와 정책제언은 표리의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활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을 통합하여 활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2009년 양자를 발전적으로 통합하기로 하여 위원수 85명 이내라는 대규모 지재전문 특별위원회가 탄생하여 그 명칭을 '일변련 지적재산센터'로 변경하였다.

6. '변호사지재 네트워크'의 창설

상기의 일변련의 '지적재산정책 추진본부'의 활동 중에 탄생한 조직으로 '변호사지재 네트워크'가 존재한다.¹⁶

변호사지재 네트워크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창설에 발맞추어 2005년 4월 8일에 설립된 전국규모의 네트워크로, 변호사의 지적재산 관련업무의 지역밀착형 사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인재의 육성 및 사법서비스의 기반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일변련은 연합체로 외부로부터 직접 지재관련업무의 상담 및 수탁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재산법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별도대 형식으로 창설된 지재전문조직이다. 변호사지재 네트워크에서는 보다 기동적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업무에 대응하고 각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의 지재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을 8개의 블록(북해도지역회, 동북지역회, 관동갑신월지역회, 중부지역회, 킨키지역회, 시코쿠지역회, 추고쿠지역회, 큐슈·오키나와지역회)으로 구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많은 지재센터 위원이 변호사지재 네트워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양 조직이 보조를 맞추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큐슈·오키나와지역회는 지리적으로 아시아를 향한 창문이라고 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지역기업의 해외전개에 대한 법적서비스플랜을 개발하여 '중국진출리걸팩'이나 '중국거래리걸팩'등의 팩플랜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¹⁷

변호사지재 네트워크는 전국의 '지재종합 지원창구'의 상주변호사를 파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영업비밀보호체제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7. 지적재산 중재센터의 활동

¹⁶ 변호사지재네트워크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iplaw-net.com/index.html> 를 참조.

웹사이트의 관리 등 조직운영이 사무작업에 대해서는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민사법연구회가 담당하고 있고 변호사지재 네트워크는 회원의 연회비만으로 운영하고 활동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¹⁷ 변호사지재네트워크 큐슈·오키나와지역회의 웹사이트 (<http://www.iplaw-qq.net/legalpack/>) 를 참조

일본변리사회와 일변련은 1998년 3월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 분야의 분쟁처리를 목적으로 '공업소유권중재센터'라는 명칭의 ADR(재판외 분쟁해결기관)을 설립했다(동년 4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 그 후 취급분야를 지적재산권 일반으로 넓혀 그 명칭을 2001년 4월부터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로 변경했다.

일변련은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했다(위원의 수는 40명 이내). 동 위원회 위원 중 다수는 지재센터의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일본지적재산 중재센터'는 동경본부, 관서지부, 나고야지부 외에 북해도, 센다이, 히로시마, 타카마츠, 후쿠오카의 5개소에 지소가 설립되었고 각 지소의 설립, 운영에는 변호사지재 네트워크의 각 지역회의 멤버가 중핵스텝으로 관여하고 있다.

8. 맺는 말

지적재산법제는 국제적 경쟁 속에 있는 일본 산업 경쟁력의 유지·향상의 관점에서 지적재산의 보호강화·독점권의 강화라는 일면적인 가치관이 강조되기 쉽지만 저작권법과 같이 국민생활의 사적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률분야도 존재한다. 지재센터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사회정의의 실현'(변호사법 1조)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항상 의식하여 사법제도를 짚어준 실무법조의 입장에서 전 법질서와 조화로운 지적재산법제의 구축 및 실무운용을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한다.

翻訳 弁護士金紀彦(弁護士法人オルビス)
李政奎(弁護士法人オルビス)

번역 변호사김기언(변호사법인 오르비스)
이정규(변호사법인 오르비스)

監修 弁護士小松陽一郎(小松法律特許事務所)
감수 변호사고마츠 요이치로우(고마츠법률특허사무소)